

※ 굵은선 안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모의 재외선거 참가신청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성명 ¹⁾	한글 (한자)	영문 (NAME)			
생년월일			성별		
말소된 주민등록번호 ²⁾					
여권사항	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연락처 ³⁾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 ⁴⁾ (E-mail)		
부모성명 ⁵⁾	부성명	모성명			
대한민국 최종주소					
등록기준지 ⁶⁾					
국외거소 ⁷⁾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	거류국명	우편번호			
	거소(로마자 또는 영문 대문자)				
붙임서류 ⁸⁾ 제출여부	<input type="checkbox"/> 여권 사본	<input type="checkbox"/> 비자 사본	<input type="checkbox"/>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 사본	<input type="checkbox"/> 거류국 외국인 등록부 등본	<input type="checkbox"/> 기타 국적확인 서류 ()
외국국적 ⁹⁾ 보유사항	외국 국적명		외국국적 취득사유	외국국적 취득일자	

본인은 「국적법」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고 모의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하며, 선거권을 확인하기 위한 국적·연령·수령 사실·등록기준지 등의 개인신상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붙임 : 1. 여권사본 1부.
 2. (비자사본)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 사본) · (외국인등록부 등본) 1부.
 3. (국적취득신고사실증명서) · (국적보유신고사실증명서) · (국적선택신고사실증명서) · (외국국적 포기유보확인서) · (외국국적포기확인서) · (병적증명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날인)¹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재외투표관리관 확인 ¹¹⁾	접수 공관명		확인결과	적합·부적합
	접수일자		부적합 사유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 위 서식은 모의선거 실시를 위해 실제 재외선거의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식을 이용해 작성한 것입니다.
 ▶ 모의선거 참가신청서는 공관 방문 이외에도 우편·팩스·이메일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실제 선거에서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작성하시기 전 뒷면에 기재된 기재요령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 주 : 1. 성명의 “한글(한자)”란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혀있는 이름을 적고, “영문”란에는 여권에 적혀있는 영문 이름을 대문자로 적습니다.
2.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었던 신청인에 한하여 적습니다.
3. “전화번호”란에는 연락이 가능한 거류국의 국가번호-지역번호-전화번호를 적고, 휴대전화 번호는 ()안에 적습니다.
4. “전자우편”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발송하는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모의선거용), 모의선거에 관한 안내자료 등을 받고자 희망하는 사람에 한하여 적습니다.
5. 본인여부 및 등록기준지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성명을 적습니다.
6. “등록기준지”란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
7. “국외거소”란은 투표용지와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 거류국명을 포함하여 로마자 또는 영문 대문자로 적어야 하며, 거소에서 우편물을 받아보기 어려운 사람은 공관을 거소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소가 잘못 적힌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재외투표관리관이 이를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8. 신청서에는 여권사본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비자사본,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 사본,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하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붙임서류 제출 여부”란의 해당 서류에 표시합니다. 붙임 서류는 모의선거인 모집마감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비자·영주권·장기체류증의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대신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국적취득신고 사실증명서, 국적보유신고사실증명서, 국적선택신고사실증명서,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병적증명서 등)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서명·날인”란에는 반드시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11.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제1항에 따라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은 공관에 하여야 하므로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해당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적습니다.